

다시 뛰는
공정도시
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63호
2022. 2. 21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2-48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
◆ 고 시

제2022-81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 3

제2022-82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제한 연장고시 8

자치법규**[입법예고]**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483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2월 21일

서울특별시 장

1. 개정이유

소방공무원 시·도별 기준정원(행안부령) 개정에 따른 정원 증원,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충원 등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,093명에서 19,138명으로 45명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화재진압·인명구조 등 소방 분야별 현장인력 보강(+45명)

－ 소방령 이하 +45

나.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으로 정원조정

－ 5급 이하 △5 → 전문경력관 +5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: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: 02-2133-6729, 팩스: 02-2133-0822, 이메일: rasrad1357@seoul.go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81호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

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라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,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, 사적 모임 및 모임행사 기준 제한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, 서울특별시 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책임자·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2월 21일
서울특별시장

1. 적용지역: 서울특별시

2. 적용기간 : 2022년 2월 19일(토) 0시 ~ 2022년 3월 13일(일) 24시

※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46호(2022.2.6.자) 및 61호(2022.2.9.자)의 ‘2. 적용기간’의 종기는 2022.2.18. 24시로 함(다만, 경과규정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년 2월 19일 05시까지 적용).

※ 경과규정 등

-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: 2022년 3월 14일(월) 05시까지 적용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이하 ‘방역패스’) 적용 대상(연령) 확대*
 - : 2022년 4월 1일(금) 0시 ~ 별도안내 시까지
 - *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(연령) : 18세 이하인 자 → 11세 이하인 자
 - *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-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
 - : 2022년 2월 7일(월) ~ 2022년 2월 25일(금)

3. 적용대상

-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
- 서울특별시 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책임자·이용자 등
- 집합·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의 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 등
- 교통시설의 운송사업자·종사자·이용자 등

- ※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지침 적용 시설 등은 붙임 자료 참고
- ※ 방역지침 등 적용대상 시설에는 인·허가 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(종) 및 기타 미인가·미등록·무허가 시설의 경우도 포함되며, 이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방역수칙 등 그대로 적용

4. 적용내용

- 처분당사자는 붙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할 것

〈변경사항〉

- 운영시간 제한
(현행) 21시 운영시간 → (변경) 22시 운영시간 제한
* 대상시설(5종): 유흥시설 등,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
※ 영화관·공연장은 마지막 영화·공연 시작시간 21→22시로 연장
-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 (12세 이상)
(현행) 2022.3.1. 시행 → (변경) 2022.4.1. 시행
- 출입자 명부 작성·관리
(현행) 작성·관리 의무 → (변경) 의무적용 해제(잠정중단)
※ 방역패스 적용시설(11종)의 경우 전자증명서(QR, Coov), 종이증명서, 신분증 부착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접종완료 확인 필수

【 참고 : 방역패스 적용시설 (총11종) 】

-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)
- 식당·카페류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, 노래(코인)연습장
-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
- PC방, 멀티방, 경륜·경정·경마장/카지노, 파티룸, 마사지업소·안마소

5. 위반 시 조치사항

- 붙임의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방역수칙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.
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6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0조 제7호,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7. 효력발생 시점 : 2022년 2월 19일(토) 0시부터

8. 처분서의 교부요청 등

-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불복절차 등
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10. 문의처 :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각 시설(장소) 소관부서

※ 방역수칙 적용 대상 주요 업종별 서울특별시 소관부서 연락처
(자치구 소관 시설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
연번	업종명	소관부서	연락처
1	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/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)	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	02-2133-4713, 4716, 4717
2	식당·카페 등 음식점	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	02-2133-4713, 4716, 4717
3	마트, 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	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	02-2133-5238
4	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	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	02-2133-5384
5	콜센터	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	02-2133-5248
6	노래(코인)연습장	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	02-2133-9221
7	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	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	02-2133-7678
8	실내체육시설(공공)	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	02-2133-2678
9	실내체육시설(민간)	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	02-2133-2747
10	학원 및 교습소 등	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	02-2133-3919
11	영화관·멀티방 등	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	02-2133-9218
12	공연장	문화본부 문화예술과	02-2133-2557
13	종교시설	문화본부 문화정책과	02-2133-2532
14	PC방·오락실	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	02-2133-9213
15	파티룸	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	02-2133-2811

연번	업종명	소관부서	연락처
16	안마소	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	02-2133-7543
17	독서실·스터디카페	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	02-2133-3919
18	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	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	02-2133-2678
19	박물관·미술관	문화본부 박물관과	02-2133-4236
20	과학관	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	02-2133-5253
21	도서관	문화본부(서울도서관)	02-2133-0202
22	직업훈련기관	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	02-2133-5463

※ 전반적인 방역수칙 및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의 방역수칙 등에 관한 문의: 감염병관리과방역관리팀(전화번호: 02-2133-7883)

※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7호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」에 따름
 ※ 서울특별시 소관 부서에서 별도 고시·공고(행정명령 등 포함)한 경우 해당 고시·공고(행정명령 등 포함)가 우선 적용됨

- 붙임 1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 2. 전국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 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> 서울소식 > 공고 > 고시·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82호

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제한 연장고시
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연장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,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2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□ 집회금지개요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0인 이상의 집회

－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집회 가능

※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.

나. 금지기간 : 2021년 12월 18일 00시부터 2022년 3월 13일 24시까지

－ 당초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53호) 금지기간 : 2021년 12월 18일 00시부터 2022년 2월 20일 24시까지

다. 위반 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
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)

라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마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바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